

보도시점

2024. 1. 23.(화) 09:30

배포

2024. 1. 23.(화) 09:30

청년농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1984. 1. 1 ~ 2006.12.31. 출생자인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농업인

대상 지역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며, 대상 농지는 1,000m²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담당 부서	농지은행처	책임자	부 장	이기봉 (061-338-5881)
	농지은행사업부	담당자	차 장	한정민 (061-338-588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업의 미래, 청년농에 맞춤!

2024년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선임대-후매도사업이란?

- 1 청년농업인이 공사에 희망농지 구입요청
 → 
- 2 농지소유자로부터 공사가 희망농지 매입
 → 
- 3 공사와 청년농 간 계약체결
 ↔ 
- 4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 후 공사가 청년농에 소유권이전
 → 

영농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행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1차) 2024.02.13. ~ 02.26. (18시까지)
(14일간, 영업일기준 10일)

2차) 2024.05.01. ~ 05.14. (18시까지)
(15일간, 영업일기준 9일)

※1차 신청 후 잔여사업비에 따라 2차 신청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신청자격

39세 이하 청년농(1984년 이후 출생자)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지원한도

1.0ha 이내
(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농지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단,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해당하여야 함)

* 세부 사업대상자 및 순위는 지원순위에 따름

-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 특·광역시 제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대상농지: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 추가적인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 참조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7,120백만원(지역본부별 연간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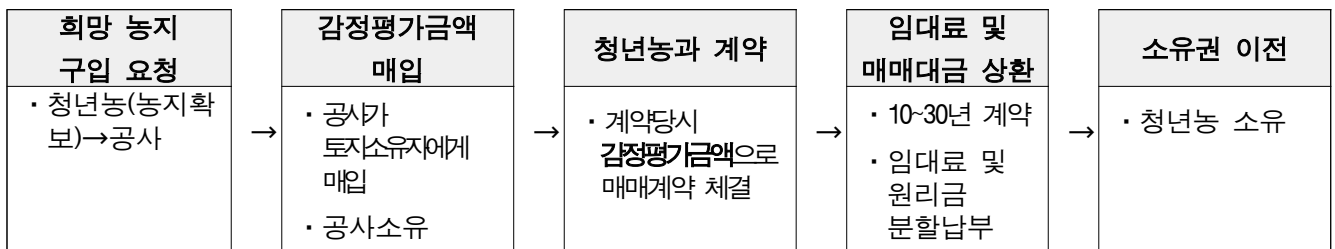
①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 대 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 일정은 운영여건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부별 잔여사업비 발생 시, 신규 청창농 선정일자를 고려하여 2차 신청 접수 진행 예정
- 신청기간 : 1차) 2024.02.13 ~ 02.26(18시까지)(14일간,영업일기준 10일)
2차) 2024.05.01 ~ 05.14(18시까지)(15일간,영업일기준 9일)
- 서류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대상자통보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6.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순위 : (1순위) 신청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2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3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 지원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겹칠 경우 ① 청년창업농 ② 2030세대로 세부 순위 설정
- 세부순위까지 신청자가 겹칠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

7.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 매도자(농지소유자)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자(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년후계농은 계약 후 제출가능), 농지대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선택사항: 졸업증명서(농업계 학교 졸업시),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상장 사본, 보유자격증 사본,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8. 유의사항

- 지원농지(매입희망농지)는 사업희망자가 직접 확보하여 신청하여야 함
- 타작물 재배 및 휴경에 따른 임차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단,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은 농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자가 부담)
 - * 최초 계약을 통해 농지소유권 농지매도자에서 공사로 이전: 등기비용 공사 부담
 - * 원리금 상환 후 농지소유권 공사에서 청년농에 이전: 등기비용 청년농 부담
- 선정 후 신청자·농지 등에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및 관련 비용(감정평가 등) 반환 불가
-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임차한 농지는 계약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가 의무됨
- 농지매도 희망자(농지소유자), 사업 신청자(선임대후매도 희망자) 모

두 사업 조건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희망자와 사업 신청자 서류 모두가 접수되어야 함

※ 계획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농지관리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